

화성 비봉지구 B1블록 금성백조 예미지 2차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본 안내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전 작성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하며,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구비서류 지참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가 허용됩니다. (은행창구 접수 불가함)
-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 배정이 불가함)
-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 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안내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작성으로 면적 및 배정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 예비대상자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정하고, 예비대상자에 부여된 순번은 실제 특별공급 예비 당첨자 순번과는 무관합니다.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에 의거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I

공급개요 안내

- 공급위치 : 화성 비봉 택지개발지구 B-1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5층, 5개동, 총 530세대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 53세대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별 세대수

(※괄호 안의 수는 예비입주자 수)

구 분		75	84A	84B	84C	합 계	
총 공급 세대수		244	171	67	48	530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10%	국가유공자	3(15)	2(10)	1(5)	1(5)	7(35)	
	장기복무 제대군인	3(15)	3(15)	1(5)	1(5)	8(4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20)	3(15)	1(5)	1(5)	9(45)	
	중소기업 근로자	9(45)	6(30)	3(15)	1(5)	19(95)	
	북한이탈주민	1(5)	1(5)	0(0)	0(0)	2(10)	
	장애인	경기도	2(10)	1(5)	1(5)	1(5)	5(25)
		서울특별시	1(5)	1(5)	0(0)	0(0)	2(10)
인천광역시		1(5)	0(0)	0(0)	0(0)	1(5)	
합 계		24(120)	17(85)	7(35)	5(25)	53(265)	

- 당첨예비자 :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으로 "당첨자"가 되는 자
- 예비대상자 :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 이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II

공급일정 안내 (예정)

구 분	일정 (예정)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	2024년 11월 15일(금)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화성 비봉지구 B1블록 금성백조 예미지 2차 홈페이지(http://bb2-yemizi.com)
견본주택OPEN	2024년 11월 15일(금)	▶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21-7
특별공급접수	2024년 11월 25일(월) (09:00~17:30)	▶ 한국 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을 통한 인터넷 청약 접수 ▶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한함 - 구비서류 미지참시 청약신청 불가
당첨자발표	2024년 12월 03일(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당첨자계약일	2024년 12월 16일(월) ~ 18일(수), 3일간 (10:00~16:00)	▶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21-7

※ 위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청약신청 전 당사 견본주택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함 • 청약통장 가입기관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세대 및 무주택구성원의 정의 /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 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320 1899 1442 2056"> <thead> <tr> <th data-bbox="320 1899 555 1989">구 분</th> <th data-bbox="555 1899 847 1989">화성시/경기도</th> <th data-bbox="847 1899 1145 1989">인천광역시</th> <th data-bbox="1145 1899 1442 1989">서울특별시</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0 1989 555 2056">전용면적 85㎡ 이하</td> <td data-bbox="555 1989 847 2056">200만원</td> <td data-bbox="847 1989 1145 2056">250만원</td> <td data-bbox="1145 1989 1442 2056">3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화성시/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구 분	화성시/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구분	선정방법
<p>당첨자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llstate-hec.co.kr/wolsan)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 한 후라도 다른 주택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및 그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과열지구내 청약시 1순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IV

유의사항 안내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및 등·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당 사업주체에 통보한 사항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형, 추천기관명, 연락처 등)
-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며, 동일 세대내 중복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등) 중복청약 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복당첨으로 인한 당첨자 명단 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 주체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당첨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역을 기반으로 정당성 여부를 재검증하고 불일치 할 경우 소명 등 일반공급 처리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부적격여부를 판정합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5년 동안 사업주체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 접수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 및 신청 취소 등 정정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4.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V

위치도 및 기타 문의사항



※ 사업지 : 화성 비봉지구 B1블록

※ 건본주택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21-7

※ 분양문의 : 1899-7642

※ 홈페이지 : <http://bb2-yemizi.com>

※ 본 안내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전 작성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추천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각 주택형별 배정 세대수에 맞게 추천인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예비추천인 명단도 동시에 추천 바랍니다.

※ **2024. 11. 20. (수) 14:00시 까지**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기간 내 미 통보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오니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서 추천대상자 명단을 한국감정원에 등록(미등록시 청약불가) 마감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관계로 회신 요청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